

* 소장 기재례

소 장

원고 김 갑 동(金 甲 東)
서울 중구 소공동 190의 6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삼수
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의 1
피고 최 삼 식(崔 三 植)
서울 서초구 반포동 253의 1

대여금 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1. 피고는 원고에게 200,000,000원을 지급하라.
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 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-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1. 원고는 2021.7.1. 피고에게 200,000,000원을 변제기일 같은 해 9. 30.로 정하여 대여하였습니다.
2. 그런데 피고는 위 변제기일이 지나도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기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여금 200,000,000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.

입 증 방 법 (생략)

첨 부 서 류 (생략)

2022. 3. 29.

원고 소송대리인
변호사 이 삼 수

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

1. 청구취지 기재례

1 이행청구

1. 금전 지급 청구

기재례

가. 기본형

- 피고는 원고에게 1,000,000원을 지급하라.

나. 원금에 덧붙여 이자,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

- 피고는 원고에게 5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2020. 2. 1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다.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

- 피고는 원고에게 5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2020. 4. 6.부터 2016. 4. 5.까지는 연 18%의, 2021. 4. 6.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피고는 원고에게 60,000,000원 및 그 중 20,000,000원에 대하여는 2020. 4. 6.부터, 40,000,000원에 대하여는 2020. 5. 8.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
2 요건사실론과 기록형 암기장

라. 1인의 피고로 하여금 여러 사람의 원고에게 동일 또는 상이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때

- 피고는 원고 A에게 5,000,000원, 원고 B에게 4,000,000원, 원고 C, D에게 각 1,000,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20. 8. 8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.
- 피고는 원고(선정당사자)에게 5,000,000원, 선정자 A에게 2,000,000원, 선정자 B, C에게 각 500,000원을 각 지급하라.

마. 여러 피고별로 이율 및 기산일이 다른 경우

- 1. 원고에게
 - 가. 피고 A는 3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2020. 4. 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,
 - 나. 피고 B는 2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2020. 6. 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, 각 지급하라.

바. 여러 피고별로 기간이 다른 경우

-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20. 1. 1.부터, 피고 B는 2020. 5. 1.부터, 피고 C는 2020. 7. 1.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.

사. 여러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없는 경우

- 원고에게, 피고 A는 50,000,000원, 피고 B는 28,000,000원, 피고 C는 12,000,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20. 6. 8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.

II 추심금청구

1. 요건사실

① 피추심채권의 존재 사실 + ② 원고가 피추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+ ③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인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사실

VIII. 청구원인 기재례와 메모 방법

I 민법총칙

1. 신의칙에 기한 항변(민법 제2조)

가. 기재례 - 금반언과 적용한계

II. 청구원인		
1. 원고의 말소등기청구	2. 예상되는 주장	3. 반박
① 원고 소유 - 甲소유권 0 ② 피고 등기 - 丙 중생등 ③ 원인무효 - i)甲과 丙 사이에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바 없고 물권적 합의도 없었기 때문에 丙 명의 등기는 원인무효 - ii)丙 명의 등기는 토지거래허가 없이 경료된 것이므로 무효	(1) 유효한 중간생략등기라는 주장 - 丙 명의의 등기는 甲·乙·丙 3자간의 합의로 경료 - 실제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	i)甲·乙, 乙·丙의 매매가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 ii)甲·乙·丙 3자간의 합의는 무효 iii) 丙 명의 등기가 실제관계에 부합 x ∴ 丙 명의 등기는 무효
	(2)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는 주장 - 피고 명의 등기는 민법 제746조 본문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 - 원고는 말소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	(판) 제746조의 불법 -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0 강행법규 위반 x - 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강행법규인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 - 불법원인급여의 불법 x
	(3) 신의칙 - 원고 甲의 말소청구는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로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	(판) 강행법규인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 -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서 이를 배척 - 국토이용관리법의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 -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다.

1. 청구취지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0.9.3. 접수 제17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당사자에 대한 항변 검토

가. 기재례 - 이해상반

II. 청구원인		
1. 원고의 말소등기청구	2. 예상되는 주장	3. 반박
<p>① 원고 소유 - 원고 丙은 A토지의 2/9 지분의 소유권자</p> <p>② 피고 등기 - B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</p> <p>③ 원인무효 - (판) (실질관련 객관적 고려설)친권자인 모와 자 사이에 이해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, 친권자인 모가 한 행위 자체의 외형상 객관적으로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어서, 모가 자를 대리하여 위 토지 중 자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이해상반행위로서 무효</p>	<p>(1) 표현대리 원고의 법정대리인의 무권대리행위 - 제126조 표현대리가 성립 - 피고명의로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고 주장</p>	<p>i) 친권자 B 법정대리권 有 ii) 이해상반행위를 하여 권한 외의 법률행위 iii) 상대방 B 은행 -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친권자 B의 대리행위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아니함 - 정당한 이유가 없다.</p>
I. 청구취지		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0. 4. 12. 접수 제1563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2/9지분에 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		

3. 목적에 대한 항변 검토 – 무효(장애의 항변)

가. 법률행위 목적의 확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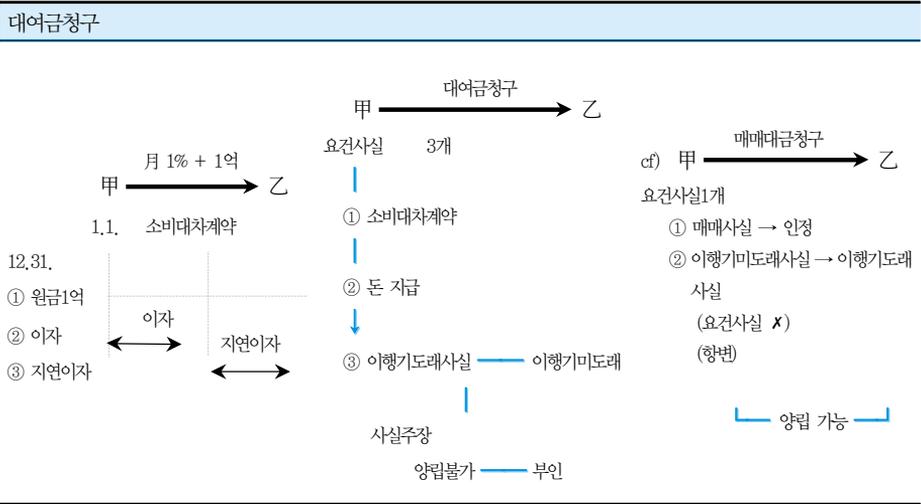
1) 자연적 해석의 기재례

II. 청구원인		
1. 원고의 소이등 청구	2. 예상되는 주장	3. 반박
① 매매계약 체결과 매매대금지급	(1) 312번지에 대해서 매매계약 불성립 주장 – 312번지 토지에 대해서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	(판) 자연적 해석 – 313번지 토지로 표시 – 312번지 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목적물로 한다는 쌍방당사자의 의사합치 有 – 매매계약은 312번지 토지에 관하여 성립
	(2) 착오로 인한 매매계약의 취소 주장 – 국가는 A 사이에 312번지 토지를 매매목적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 – 계약서에는 313번지 토지로 표시 – 제109조의 착오취소 주장	(판) 자연적 해석에 의해 당사자의 일치된 진의대로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312번지 토지로 확정 – 국가는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.
	(3) 소멸시효 – 매수인 A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고 10년이 경과하여 시효소멸하였다고 주장	(판) A는 312번지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·사용 – A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 x
I. 청구취지		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6.1.5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.		

2) 임차토지인도청구와 건물매수청구 기재례

II. 청구원인		
1. 원고의 토지인도청구		
1. 요건검토	2. 피고의 예상되는 주장	3. 반박과 소결
① 임대차 계약사실 ② 임대목적물 인도사실 ③ 임대차 종료사실 -임대기간 만료 ④ 임대인 지위승계사실 - 甲토지임차+건물신축+ 2014.2.1.보존 등기=대항력 취득 (제622조 제1항) - 양수인 丙은 i)임대인의 지위승계+ ii)보증금반환채무 면책적 인수	(1) 동이항 1) 보증금반환(동이항○ 유치권×) -(판)임차인의 임차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의 동시이행관계 인정 - 유치권 부정 2) 부매청 ×	1) 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한 재항변 ① 갹신× ② 공제× i) 임차기간 중 차임 공제 가능 ii) 임차기간 경과 후 차임상당부당이득반환청구는 실질적 이득이 없으므로 공제 불가 - 상환이행판결(甲은 丙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)
2. 원고의 건물인도청구		
1. 요건검토	2. 피고의 예상되는 주장	3. 반박과 소결
1) 피고의 건매청 행사 ① 甲의 토지 임대차 ② 임대기간이 2015. 3.20. 만료 ③ 건물이 현존 ④ 갹신거절의사 ∴ 甲은 건물매수청구 가능 2)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 성립	1) 동이항 -피고 甲의 원고 丙에 대한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 전등기 및 인도의무 -원고 丙의 피고 甲에 대한 매매대금지급의무 =동시이행의 관계 인정	건물매수청구권(제643조)은 강행규정(제652조) - 건물매수청구권 포기특약 원칙 - 무효 예외 - 포기특약이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볼 특별한 사정 無 -(판) 상환이행판결 불가(처분권주의에 반함) - 청구기간 전에 적극적 석명의무 - 원고가 소변경하면 상환이행판결 - 소변경 안하면 청구기각 -∴ 건매청 행사에 기한 건물인도로의 상환이행청구해야 함
I. 청구취지		
1. 피고는 원고에게, 가. 원고로부터 100,000,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목록 기재 토지를, 나. 원고로부터 300,000,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목록 기재 부속물을 각 인도하라.		

5.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 청구



6. 도급계약에 기한 청구

가. 수급인의 공사대금청구 기록풀이구조

공사대금청구의 기록풀이구조		
원고(수급인)의 청구	피고(도급인)의 항변	원고의 재항변
①도급계약체결사실	① 동시이행항변 i)인도시까지 ii)수급인의 담보책임	
②일의 완성 사실	② 도급계약의 해제 항변	

1) 기재례 - 공사대금청구

II. 청구원인 - 乙의 공사대금 청구권의 성립		
1.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	2. 피고의 예상되는 주장	3. 원고의 반박
(1) 도급계약에 기한	(1)동이항	

청구 ① 도급계약사실 ② 일의 완성사실	- 주택 인도청구와 공사대금 청구는 동이항 인정	
	(2) 지체상금으로 상계 항변 ① 공사잔대금채권과 지체상금채권 모두 금전채권으로서 동종의 채권에 해당 ② 양 채권 모두 공사완료와 약정 준공일 도과로 상계적상 인정 ③ 상계의 의사표시 도달 ∴ 상계항변 가능	④ 수급인 B의 공사잔대금 채권에 대하여 도급인 A는 연립주택인도와 동시이행항변 - 수급인 B은 공사잔대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도급인 A의 지체상금 채권과 상계가 가능 ∴ 인정
I. 청구취지		
1.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4,000,000원을 지급하라.		

나. 도급인의 목적물 인도청구 기록물이구조

1) 기재례 - 도급인의 목적물 인도청구

II. 청구원인 - 甲의 주택인도청구권의 성립		
1. 원고의 주택인도청구	2. 피고의 예상되는 항변	3. 반박
(1)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① 원고 甲의 소유사실 -(판) 원칙적으로 수급인 귀속설 - 도급인 甲과 수급인 B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합의 有 -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소유권 귀속 ② 피고 B의 점유사실	(1) 유치권 ① 甲소유의 연립주택을 점유 ② 공사대금은 물건에 관하여 생기 채권 ③ 공사를 마쳤으므로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 도래 ④ 적법하게 점유 ⑤ 별다른 유치권 배제특약 無 ∴ 유치권항변 가능 (2) 동이항도 가능 수급인 B의 甲에 대한 위 건물인도의 무와 도급인 甲의 B에 대한 공사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 인정	
I. 청구취지		
1. 피고는 원고로부터 60,000,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.		